

#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7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나 신고의무 및 토지의 지목·면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 및 멸실 되었을 때 등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각각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세무부서 신고를 폐지하고,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등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도 세무부서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(안 제32조 및 안 제79조)

## 3. 참고사항

○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4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99-106호(99. 6. 23 - 7. 12)

5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및 제79조제7항을 “삭제”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2. <u>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</u></p> <p>3. <u>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</u></p> <p>⑧ “생략”</p>	<p>⑧(현행과 같음)</p>